

성능평가 및 안전점검 등 기술용역 집행계획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 법 시행령 제52조,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성능평가 및 안전점검 등 기술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11.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단위:백만원)

용역명	용역개요	평가방법	예산규모 (추정금액)	비고
국도3호선 남강대교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기술용역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포함)	PQ	166	경남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며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기간 : 2022. 11. 11.(금) ~ 2022. 11. 17.(목)

2) 주소 : <http://pcmo.mltm.go.kr>

☞ 클릭(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국토 공지사향))

나. 평가자료 제출일 : 2022. 11. 17.(목) 13:00~15:00까지(우편접수 불가)

※ 용역별 평가자료 제출시간을 참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자료 제출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2층 상황실

라. 제출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 1부), 자기평가서 2부(별도), 업체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별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대장, 용역 참여업체 현황(전자우편) 필히제출(dhk7554@korea.kr)

※ 용역참여업체 현황(전자우편)은 '22. 11. 17.(목) 12:00까지 제출

마. 참가자격

입찰참가 업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으로 한다)」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인 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 1)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참여(사업책임·분야책임·분야참여)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 2)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에 한한다.
- 3) **성능평가**의 경우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참여(사업책임·분야책임·분야참여)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해당되는 업체의 경우 입찰이 제한된다.
- 5) 입찰집행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P.Q 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 해당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잔여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나. P.Q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90점 이상인 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되,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도 포함하여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한다.

단, 평가점수가 일정점수(8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사업은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의 경우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사업 중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의 경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본점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로 하며,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사업에 참여하려는 각 업체는 금회 공고되는 용역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 각 회사당 1개의 용역에 참여가능하며 중복참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라. 참여기술자를 용역사업에 중복 배치하여 참여할 경우 모든 용역 사업에 대하여 무효(실격)처리 합니다.

마.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사무소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부분)에 편철하고 별도로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 후 개별통지하고,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3조 및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965호, 2018.01.04.)에 따릅니다.

자.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평가대상)은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고, 계약 후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시 이를 감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가 가능하며 우리사무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상 평가점수가 당초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 참여기술자 교체 승인 신청이 가능함.

차.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평가서 작성요령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같음하며, 평가자료 제출 시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도급사(공동도급사) 대표회사 명의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표회사 직인 등은 불필요)

카. 평가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타.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진주 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